

작성 방법

1. ①건설자금이자란에는 ⑬건설자금이자계상대상금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건설완료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2. ②회사계상액란에는 회사가 장부상 건설가계정등으로 계상한 지급이자금액을 적습니다.
3. ③상각대상자산분란에는 토지등 비상각자산분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④차감조정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.
5. ⑤건설자산명란에는 토지, 건물, 기계장치등 순으로 적습니다.
6. ⑧차입금액란에는 건설자금에 총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총액을 기입하되, 그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⑩당기 지급이자란에는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의 합계액을 기입하되, 동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적습니다.
8. ⑪준공일 또는 준공예정일란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일을 적습니다.
9. ⑬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금액은 당기중에 건설완료된 자산은 그 준공일까지, 건설이 진행중인 자산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를 각각 적습니다.
10. ⑭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 합계금액에는 동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